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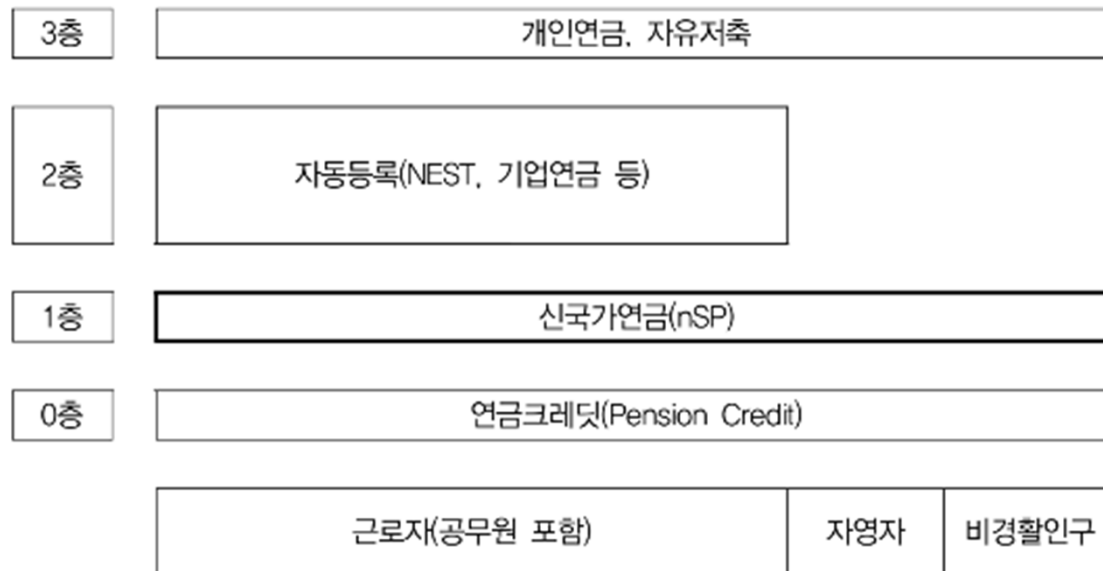
영국의 공·사적 연금제도 연구

MFA 8기 김남기

I. 영국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관

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조

-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기본적으로 베버리지(Beveridge)형 체계**
 - 공적연금은 빈곤경감 기능에 한정하고 중산층 이상의 소득보장체계는 사적연금이 중심이 되는 체계
 - 0층의 경우 노인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인 연금크레딧이 존재
 - 1층의 경우 거둬진 연금개혁으로 공적연금이 통합되었음 (신국가연금:nSP)
 - 2층의 경우 강제와 자발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자동등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NEST 존재



주: 신국가연금은 남성은 1951년 4월 6일, 여성은 1953년 4월 6일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. 그 이전 출생자는 구제도에 적용됨.

II. 영국 공적연금제도

공적연금제도의 현황

- **공적연금의 종류**

- 2016년 4월 6일 이후 신국가연금(nSP)으로 통합

- : nSP는 2016년 4월부터 발생하는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므로, 기존의 1층 국가기초연금(BSP)과 2층 부가연금(S2P, SERPS)에 대한 수급권은 현재까지 그대로 인정

- : 0층에는 공공부조 성격의 연금크레딧이 2003년부터 운영

- **적용체계**

- BSP와 S2P는 남자의 경우 1951년 4월 6일 이전 출생자, 여자의 경우 1953년 4월 6일 이전 출생자를 위한 제도이며, 그 이후 출생자는 nSP에 적용됨

기존 국가연금(BSP, S2P)과 신국가연금(nSP)

■ 주요 차이

- 신국가연금은 기존의 BSP 급여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
- BSP의 경우 완전수급하기 위해 3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한 반면, nSP의 경우 35년이 필요
- BSP의 경우 최소 가입기간이 없었으나, nSP의 경우 10년으로 강화
-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당초 계획보다 8년 앞당겨 2026~28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

■ 수급자 변화 추이

- 2005년 12백만 명이었던 국가연금 수급자는 2018년 13백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, 전년도인 2016년에 비해서는 64천명 감소
- 2016년 4월 이후 발생한 nSP의 수급자는 2018년 5월 기준 44만명

공적연금제도의 평가

- **공적 연금의 단순화로 개인 저축 강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**
 - 국가연금 수급자수는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
- **노인빈곤율의 큰 폭 감소**
 - 연금크레딧(Pension Credit)의 역할, 공적연금의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감소, 크레딧 제도 확대, 자영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공적연금 일원화 등 노인빈곤 위험이 높은 집단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
 - 그 결과 2015~16년 현재 중위소득의 60% 기준 노인빈곤율은 17%로서 전체 인구 빈고율 16%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, 이는 그 격차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음 (1997~8년 노인빈곤율이 30%에 육박)
- **BSP와 S2P의 통합으로 여성, 저소득근로자, 자영자 등에 대한 재분배 효과(Flat-rate benefit)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**

III. 영국 사적연금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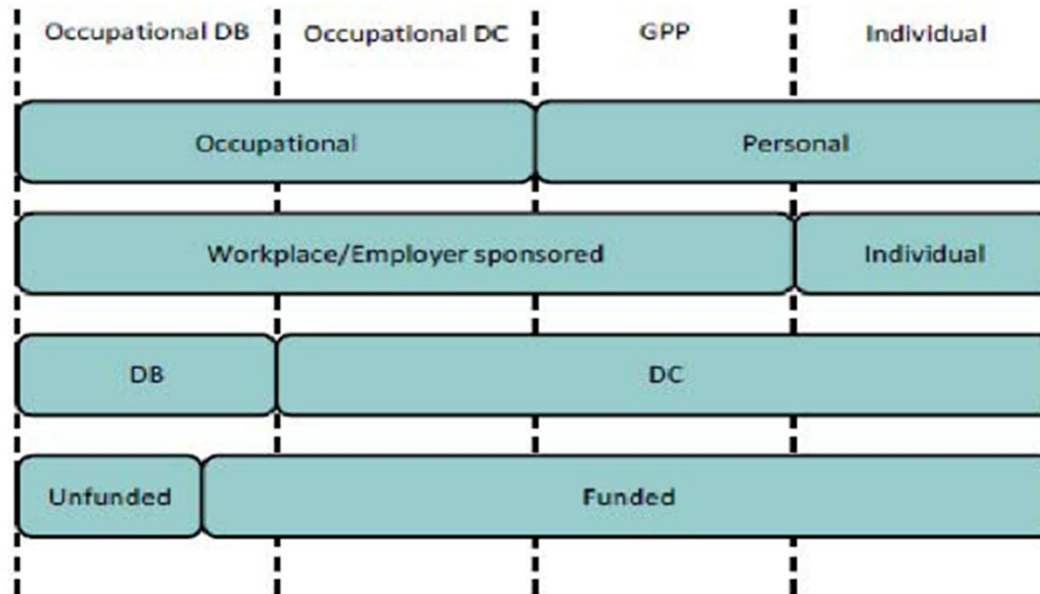
영국 사적연금의 구조

- 기업연금 vs. 개인연금

- Workplace Pension

- :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위해 계약이나 기금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 뿐 아니라,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스폰서 역할만 하는 개인계좌 형태의 연금까지 포함

- GPP와 GSHP와 같은 연금을 개인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의 IRP 개념으로 생각하면 퇴직연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



자료: HM Revenue and Customs(2017), Personal Pension Statistics.

Workplace Pension

- **2012년 자동등록(automatic enrolment)을 특징으로 하는 NEST라는 개인계좌제도 도입**
 - 자동등록 방식은 사업주에게 적격 노동자들을 자동으로 개인계좌제도에 가입시키도록 하고 사업주의 기여를 강제함
 - 2012년 10월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8년 10월 전 사업자의 노동자로 확대
 - Workplace Pension은 영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2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DB 기업연금, DC기업연금, GPP, GSHP, NEST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
- **Workplace Pension의 현황**
 - 적용대상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였으나 최근 자동 등록 도입 이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
 - 기업연금의 급여 결정은 DB형과 DC형으로 구분됨
- **Workplace Pension의 평가**
 - 2016년 contracting-out의 완전 폐지로 인해서 영국에서 사적 2층 연금의 중요성이 증가함
 - 영국의 낮은 공적연금 수준을 고려할 때 Workplace pension이 소득유지를 위해 충분하기 않는 수준임을 보여줌

개인연금

- **영국의 개인연금 제도는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**

- 가입자수는 최근 들어 변화하고 있음

- : 2000년대 초부터 2012년 자동등록 방식 도입 이전까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2년 자동등록 방식도입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

- 급여 수급자나 수급액이 증가하고 있음

- : 2015~6년 현재 노인 중 18%가 개인연금 수령 중 (10년전 12% 수준)

- **개인연금의 평가**

- 영국의 개인연금은 정부의 정책에 좌우되어 왔음

- : 최근 개인연금은 부차적인 역할로 줄어들었으나, 실제로 수급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요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

IV. 시사점 및 결론

1. 공사연금의 보편성

- **공적연금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 광범위한 크레딧제도 운영**

-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경우(carer), 장기질환자나 장애인인 본인 또는 이들을 돌보는 경우, 자녀 양육 기간, 실업 등 274개 사유에 대하여 광범위한 크레딧을 제공하며,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신국가연금(nSP)의 가입기간으로 인정
- 차상위 계층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nSP의 가입자로 인정
- 결국, 저소득층에 대한 광범위한 크레딧제도 및 차상위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제도가 공적연금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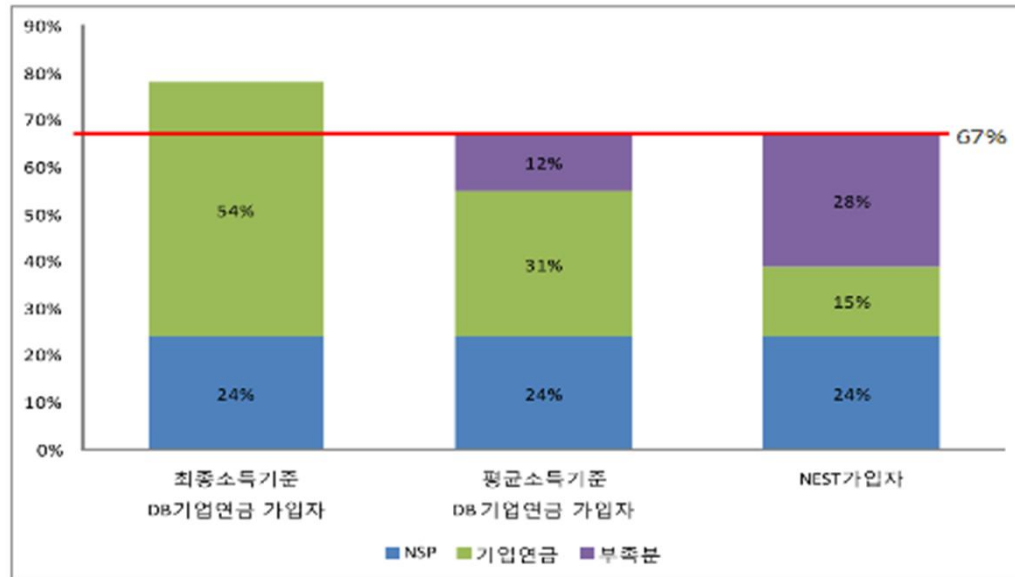
- **우리나라의 경우 광범위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 有**

-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될 당시 10인 이상 사업자에 적용되었고, 제도 시행 10여년 만에 전 국민 포괄제도로 발전
- 그럼에도 불구하고 18~59세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의 실제 가입자인 보험료 납부자의 비중은 65% 정도임
 - : 납부예외자(약 450만명)와 보험료 장기체납자(약 100만명)의 규모가 크기 때문
-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를 다양화하고 현행 크레딧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

2. 공사연금의 급여 적정성(1)

■ 향후 노후소득보장 수준

- DB 기업연금으로서 최종소득기준인 경우 소득대체율이 54%로 추정되며, 평균소득기준으로는 31%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
- 장기적으로 볼때 공적부문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자동등록 방식에 의한 DC형 Workplace Pension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후소득 부족은 불가피해 보임



2. 공사연금의 급여 적정성(2)

■ 현재 노인 세대의 소득 분포 분석

- 공적연금 등 국가의 급여는 재분배적 성격 때문에 소득 계층별로 급여액의 차이가 매우 적음
: 저소득층(1/5분위)의 경우 노후소득의 약 75%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급여에 의존 중
- 노후소득에서 사적연금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기업연금 금액과 개인연금 금액은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
- 노후소득의 경우 저소득층은 공적부문으로부터, 중산층 이상은 사적부문으로부터 주요한 노후 소득을 보장받고 있음

■ 급여 적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

- 1998년과 2007년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지만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이 70%에서 2028년 40%로 하락하여 급여적정성은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음
- 두차례의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30년 가입시 30%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, 퇴직연금은 약 20% 수준으로 예상됨
- 실제로 2017년 기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17년이며,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%로 명목 소득대체율(45.5%)에 비해 낮은 수준임

3. 공사연금의 지속 가능성(1)

- **영국 연금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공적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 조기 해소**
 - 2차 세계대전 이후 베버리지 구상에 의거하여 국가는 기초적 수준의 노후보장을 하는데 그 역할을 국한하고, 그 이상의 보장은 사적연금을 통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
: 대처정부 이후 국가의 역할은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
 - 2007년 연금법 개정 이후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2층 보장에서 자동등록 방식이 도입되면서 모든 사업장은 그들의 근로자들을 NEST를 포함한 Workplace Pension에 가입시켜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사실상 2층 사적연금이 준강제화됨
 -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은 빈곤경감 기능에 한정

- **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%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4.5%씩 부담하고 있으며, 자영업자의 경우 9%를 모두 부담**
 -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은(40%)은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 평균 소득대체율(41.3%) 수준임
 -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지속성을 위해서는 적정 기여-적정 급여가 필요하며, 이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을 함께 논의할 필요 有

3. 공사연금의 지속 가능성(2)

- 영국의 경우 기업연금의 경우 DC형은 평균 9%, DB형은 평균 20% 이상을 보험료로 기여
 - 연금재정에 관한 논의는 공적연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나, 사적연금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- 우리나라 역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할 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
 - 퇴직연금 보험료는 8.3%로 결코 국민연금에 비해서 낮지 않은 수준임
 -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에 있어서도 퇴직연금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 有

Thank You